



김 석 구 우리회 11대 회장  
(주)3D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내진안전성 확보 ‘작은 건축물’도 예외 없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22일 소규모건축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구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을 제정·공고하였다. 지금까지 건축법시행령은 3층 이상 또는 1000㎡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기준에 따라 내진 안전성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지만, 그보다 작은 소규모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의 비용부담을 이유로 구조안전의 확인(確認)의무대상에서 제외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별도의 구조계산을 하지 않고도 지진은 물론 눈이나 바람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 이 지침을 활용하면 소규모건축물도 국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손쉽게 지진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지침은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이후 2층 이하 소규모건축물까지 내진안전의 확인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국토부가 지난 5월 입법예고한 ‘건축법시행령개정안’의 건축물의 내진안전 확인대상 확대(안)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철회권고가 내려짐에 따른 대안으로 보인다.

그 이전에는 전체 건축물의 84%를 차지하는 2층 이하 건축물은 내진성능의 확인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이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고, 기존 건축물(일부 건축물에 한해 제한적으로)은 증·개축이나 리모델링 시 내진보강을 포함한 구조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해 지진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하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규개위는 국내의 지진발생이나 피해현황을 고려할 때 국토부(안)은 추가적으로 발생할 비용에 비해 실익이 적다고 판단했고, 당시 회의에서 “구조안전 확인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많은 비용의 추가가 예상된다.” 등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세계 각국의 지진피해는 1~2층 소규모건축물의 피해가 더욱 크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며 내진 전문가들은 1~2층 소규모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적용해도 그 비용증가는 미미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납득할 수가 없다’는 의견 등이 제시된 바 있다.

결국 국토부는 원칙적으로 소규모건축물도 내진성능을 확보해야 하며, 국민안전과 관련돼 있는 만큼 내진성능 확인대상 건축물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백지화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우선 이번 구조지침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침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모든 건축물이 내진구조로 설계·시공됨을 온 국민들에게 알려 안심시켜야 한다. 실제로 건축법에서는 이미 오래전(1988년)부터 모든 건축물이 내설(耐雪)·내풍(耐風)·내진(耐震)안전성을 확보(確保)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무화하고 있다.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①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

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한다. ②~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확인대상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또한 건축법 제23·24·25조에서 설계자·시공자·공사감리자 모두 건축법 제48조를 준수토록 하고 있어 모든 건축물이 지진 등에 대하여 구조내력을 확보하도록 설계·시공·감리하여야하는 것이다.

이처럼 건축법상 구조안전의 확보(確保)의무와 더불어 그 확인(確認)의무까지를 건축법시행령(제32조)은 설계자에게 추가부여하고 있다는 것이 법리해석이다. 그럼에도 일부 설계자들은 건축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소규모건축물은 내진설계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왜곡주장하고 있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건축법 제48조제2항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은 구조내력이 확보되었음을 지자체 건축인허가권자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과 행정절차(건축행정서식 등)를 규정하라는 뜻이지 확인대상을 임의로 축소하고 더구나 관계전문 기술자가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 법률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 건축법시행령처럼 건축물 구조안전의 확인대상에 일정규모 이상만을 규정한 나라는 없으며, 확인의무가 없으니 확보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는 설계자는 더더욱 없다. 따라서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건축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야 한다. 한미FTA 등 법률시장개방체제에서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관계자들을 외국 로펌 먹잇감으로 방치할 순 없지 않은가?

구조안전을 확보·확인하는 방법·내용과 절차는 건축구조기준(KBC)에 기술되었듯 골조해석·구조계산으로 접근하므로 일반 공산품의 실물실험(예컨대 자동차 충돌실험)처럼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그 효용성(자동차10년 vs 건축물100년)은 후손들에게까지 미친다.

살기 좋고 안전한 나라,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